##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147 제출연월일 : 2024. 7. 23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 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라목 중 "근로자"를 "청년·근로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"공익사업"이란 다음 각 목	1		
의 사업을 말한다.		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
라. <u>근로자</u> 의 고용 촉진 및	라. <u>청년·근로자</u>		
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			
는 사업			
마. ~ 하. (생 략)	마. ~ 하. (현행과 같음)	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		